

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만균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846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화숙, 김제리, 박상구, 고병국,
이상훈, 노식래, 이성배, 봉양순,
이석주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공공건축물 건립시 설계자의 의도를 설명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공건축의 설계의도 구현을 도모하고, 서울시 정책의 정확한 의도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여 정책구현의 신뢰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건립시 설계의도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,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도록 함(안 제9조제5항 신설)
- 나. 설계의도 표지판은 설계자가 디자인을 하되, 규격·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6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⑤ 시장등은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, 그 내용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준공표지판과 별도 설치
2. 준공표지판에 혼합하여 설치

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자가 설계하고, 표지판의 규격·재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|--|
| |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8.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도</p> |

서울특별시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사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(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)를 개정하여 공공건축물 건립 시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나. 추계결과 ≒ 800,000천원(연평균 160,00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60,00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설계의도 구현 표지판은 준공표지판과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. 설계비 1억 원 이상에 적용
 - 대상 건축물의 수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
 - 위 자료 중 ‘자치구등’으로 표기된 건축물 수는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(자치구청장 부담)과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을 포함한 것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산하기관 발주 건축물 수를 ‘자치구등’의 50%로 가정
 - 1개소 당 공사비는 사례가 없으나,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조사한 유사한 사례(이문고가 개선사업)의 단가를 적용
 - 발주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간접비 등은 고려하지 않음
 - 물가상승률, 사업의 확대 등은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800,000천원

- 총비용 = 표지판 설치비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| 연도 | 1차년도 (2021) | 2차년도 (2022) | 3차년도 (2023) | 4차년도 (2024) | 5차년도 (2025)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입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a)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표지판 설치비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800,000 |
| | 소계(b)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800,000 |
| □ 총 비용(b-a) | |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160,000 | 800,000 |

○ 설계의도 표지판 설치비 = $\sum_{i=1}^5$ (설계의도 표지판 설치비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
- 연간 표지판 설치비 규모 ≙ 160,000천원/년

≙ 40건/년 × 4,000천원/건

▶ 대상 건축물의 수 추정 : 23 + (34/2) ≙ 40건/년

(1건 미만은 올림하여 반영)

(단위: 건)

| 설계비 구분 | 연평균 | | | 2017 | | | 2018 | | |
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|
| | 계 | 시 | 자치 구등 | 계 | 시 | 자치 구등 | 계 | 시 | 자치 구등 |
| 계 | 792 | 154 | 638 | 862 | 154 | 708 | 722 | 154 | 568 |
| 5천만원 이하 | 702 | 121.5 | 580.5 | 765 | 126 | 639 | 639 | 117 | 522 |
| 5천만~1억 원 | 34 | 10 | 24 | 33 | 7 | 26 | 34 | 13 | 22 |
| 1억원 이상 | 56 | 22.5 | 33.5 | 64 | 21 | 43 | 48 | 24 | 24 |

자료 : 도시공간개선단

▶ 공사단가의 반영 : 400만원/건(도시공간개선단 제공 금액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예산분석관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